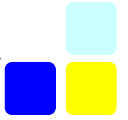


바른 인성을 갖추고 공동체의 꿈을 향해 도약하는 경북인



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



경북중학교

<http://kyongbuk.ms.kr>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감암길 16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경북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 22조 제 2항에 근거, ‘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경북중학교 학생들이 착용할 교복의 디자인 및 사양을 정하고 본교 교복의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본교 교복 규정에 맞게 교복 제작 업체가 제작하고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장 교복선정위원회

제3조(교복선정위원회 구성)

- ① 교복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은 교감, 학생생활안전부장으로 한다.
- ③ 위촉 위원은 학부모위원 2명, 학생대표 5명으로 구성하고, 학교 교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복 업무 담당교사로 한다.
- ⑦ 기타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교복선정위원회 기능 및 역할)

- ① 교복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역할을 담당한다.
 1. 교복 구매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2. 교복 구매 관련 학부모 여론 수렴 및 구매 희망자 수 조사
 3. 교복 사양(디자인, 원단 등) 조사 및 교복 샘플, 교복 제조 사양서 작성
 4. 교복 업체 선정 기준, 입찰 방식 등에 대한 규정 제정
 5. 교복 가격 결정 및 공개 입찰 주관
 6. 교복 업체 선정 및 직접 계약 체결
 7. 교복 제작 과정 감독 및 하자 처리
- ② 교복선정위원회는 교복사양서와 사진, 규정 등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5조(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교복 구매계획 및 예산 편성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 3장 교복 및 생활복(단체복)

제6조(교복의 구성)

- ① 남자와 여자 교복은 동복, 하복으로 구성한다.
- ② 남자 동복은 자켓(상의), 와이셔츠(상의), 니트 조끼, 바지(하의), 넥타이로 구성한다.
- ③ 여자 동복은 자켓(상의), 블라우스(상의), 니트 조끼, 바지/스커트(하의), 넥타이로 구성한다.
- ④ 남자와 여자 하복은 생활복(상의), 반바지로 구성한다.

제7조(교복 사양서) 교복 사양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경북중학교 교복 사양서”[별표 1]에 따른다.

제8조(생활복·단체복)

- ① 교복 착용이 원칙이나, 다음 각 항의 예외를 둔다.
 - 1. 검정색, 남색 계열의 슬랙스 바지는 허용한다.
 - 2. 흰색 계열의 민무늬 셔츠는 허용한다.
 - 3. 동복 자켓, 빅타이 착용은 학생의 개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4. 교복바지가 없는 여학생들은 체육교과가 있는 날에는 치마 대신 바지를 입고 등교할 수 있다.
- ② 체육 활동이나 실습 시 안전을 위하여 수업에 필요한 복장(체육복, 실습복) 및 운동화를 착용한다.

제9조(계약 조건) 교복 구매 시 계약 조건은 “경북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별표 2]에 따른다.

제10조(수납 및 학교회계 처리)

- ①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서 교복을 구매한다.
- ② 단품 추가구매의 경우 구입과 지출은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개별 구매한다.
- ③ 교복 물려 입기를 제외한 수요를 파악하여 구매를 추진한다.

[부 칙]

제1조(규정의 제·개정) 본 규정은 교복선정위원회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제·개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청 지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학교장의 내부 결재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2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시행) 본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4조(개정 및 시행)

- 본 규정은 2020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22년 09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1] 교복 사양서

경북중학교 교복 사양서

가. 교복 사양서

구분		섬유 혼용률	비고
하복 (2pcs)	상의(남·여 티셔츠)	폴리에스테르 100%	
	하의(남·여 반바지)	울 60% + 레이온 40%	
춘추복· 동복 (4pcs)	상의(남-셔츠, 여-블라우스)	폴리에스테르 75% + 레이온 25%	
	조끼(남·여-니트)	폴리에스테르 50% + 아크릴 50%	V형 네크라인, 감청색
	상의(남·여-자켓)	울 60% + 폴리에스테르 37% + 폴리우레탄 3%	
	하의(남-바지, 여-바지/스커트)	울 60% + 폴리에스테르 37% + 폴리우레탄 3%	
안감		폴리에스테르 100%	동복 자켓
춘추복 넥타이(남·여)		폴리에스테르 100%	

구분	동복	춘추복	하복	
갓춤	상의외투 + 하의 + 와이셔츠 + 넥타이 + 조끼	하의 + 와이셔츠(블라우스) + 넥타이 + 조끼	하의 + 상의	
옷감	폴리에스테르, 레이온, 모직	폴리에스테르, 레이온, 모직	폴리에스테르	
남	상의	x	x	
			흰색바탕 + 감청색(팔꿈치, 깃)	
			누운깃(감청색) + 남방형단추 6	
			무갈래(통)형	
			반팔	
			양가슴 덮개 주머니2	
	와이셔츠	흰색 + 누운깃 + 앞단추7 + 손목단추2	x	
	조끼	교표	원가슴: 경북(마름모)	x
		색상	남색	
	넥타이	감청색 지퍼고정형		x
	하의	형태	바지	반바지/긴바지 (희망에 따라)
		색상	감청색	감청색
		허리	벨트 고정형	벨트 고정형
		주머니	좌우 옆주머니	좌우 옆주머니
상의	x		x	
			흰색	
			누운깃(둥근모양), 직각형	
			양장형 무갈래(통)형	
			반팔	
			원 가슴위 노출형1	
블라우스	흰색 + 누운깃 + 앞단추7 + 손목단추2	x		
조끼	교표	원가슴: 경북(마름모)	x	
	색상	감청색		
넥타이	감청색 지퍼고정형		x	
하의	형태	치마, 바지	치마바지, 바지(희망에 따라)	
	색상	감청색		
	허리	얇은 지퍼형 갈고리 고정형		
	주머니	좌우 옆주머니		
	단	치마: 양장형 무갈래(통)형, 앞 주름 양쪽2선	양장형 무갈래(통)형, 앞 주름 2선	

※ 여학생은 동복·춘추복 구매 시 개인 기호에 따라 와이셔츠/블라우스, 바지/치마 중 선택 가능

나. 교복 사진

○ 동복(춘추복) - 남학생



○ 하복 - 남학생



○ 동복(춘추복) - 여학생



○ 하복 - 여학생



※여학생은 개인 기호에 따라 치마/반바지 중 선택 가능

[별표 2] 경북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경북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경북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북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계약물품은 본교 지정장소에 다음의 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① 교복(동복) : 20○○. ○○. ○○.(○)

② 하복(생활복) : 20○○. ○○. ○○.(○)

※ 천재지변, 사회재난(감염병 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사일정 등의 조정 시, 계약내용 변경(계약기간, 납품 일정 변경 등) 가능

제2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3조(교복 치수 측정)

①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학생의 성장속도를 고려하여 동복과 하복의 측정 시기를 2회로 함)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 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땀, 땀의 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굵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

는 균일하게 10mm 간 5~6뿔으로 박아야 한다.

-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에 되어 있어야 한다.
-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 ②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